

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하였다.

*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점검반이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시설 현장점검 중

** 가금농가가 2,703호(닭 2,157호, 오리 400호, 기타 146호), 축산시설 893개소(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GP센터, 전통시장 등)

◆ 그간 점검결과

○ 점검대상 7,560개소(6월기준) 중 3,596개소(48%) 점검 완료(19.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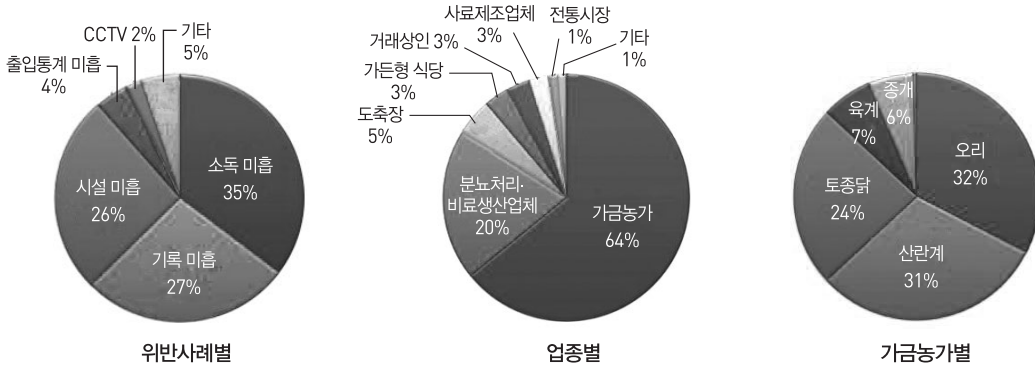
* 가금농가 6,017호 중 2,703호(45%), 축산시설 1,543개소 중 893개소(57%)

- 소독 미실시, 소독시설 미구비 등 법령위반 9건과 울타리·그물망·전실 미흡 등 현지도 384건 적발(총 393건, 점검개소수 대비 11%)

○ 점검결과

점검 대상	점검 현황(4~6월)	점검 결과	
		법령 위반(확인세)	현지도
①가금농가 6,017호 * 오리629호, 닭5,191, 기타 197	2,703호(45%) * 오리400호, 닭2,157, 기타 146	1건 (토종닭)	251건
②축산시설 1,543개소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GP센터, 전통시장, 계류장 등)	893개소(57%)	8건 (분뇨5, 거래상인2, 도계장1)	133건
총 7,589호	3,596개소(48%)	9건	384건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중간결과 분석



◆ 주요 점검결과 분석 ◆

☞ (법령위반) 총 9건[토종닭농가 1호(재입식 절차 미준수*), 분뇨·비료업체 5개소·가금거래상인 2명·도축장 1개소(소독 미실시·기록 미작성** 등 소독 관리 부적격)]

* 재입식 절차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독 부적격 : 50만원 이하(도계장은 100만원)

☞ (사례별 분석) 총 393건 지적 중 ① 소독관리 미흡 139건(35%) - 유효기간 경과 소독약, 희석배율 미준수,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등, ② 방역기록 미흡 107건(27%) - 출입·소독·거래·산란·폐사 기록 등, ③ 방역시설 미흡 102건(26%) -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 이외 출입통제 미흡 17건, CCTV 관리 미흡 8건, 차량 관리 미흡 5건, 이동승인서 미지참 등 기타 15건

☞ (업종별) 가금농가 방역 미흡 총 252건 중 오리 82건(33%), 산란계 77건(31%) 비중이 높으며, 축산시설 141건 중 비료·분뇨업체가 78건(55%)으로 가장 많음

* (오리) 전실 미흡 36건, 기록 미흡 16건 등, (산란계) 소독 미흡 27건, 기록 미흡 19건 등

* (비료·분뇨업체) 소독 미흡 38건, 기록 미흡 23건, 출입통제 미흡 14건 등

◆ 향후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하여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참고 ▶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1. 소독제 사용 원칙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별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사항

축산·방역시설	장소	희석배수	비고(소독대상 조건)
농장	농장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축사소독조	유기물조건	
	축사내외부	유기물조건	
도축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사료공장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출입구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부화장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출입구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분뇨□비료공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가축시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계란 GP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출입구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거점소독시설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출입구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소독차량	도로, 철새도래지 등	유기물조건	

※ 동 수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법령·고시·SOP) 등에 따름